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426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1. [redacted]세무서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15. 선고 2019구합63263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0. 23.
판 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2017. 10. 16. 한 ① 원고 A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7,591,449원(가산세 160,788,450원 포함), ② 원고 B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812,190원(가산세 100,673,364원 포함)에 대한 각 신고시인결정 및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7. 10. 16. 한 ① 원고 A에 대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53,759,140원(가산세 16,078,841원 포함), ② 원고 B에 대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33,681,216원(가산세 10,067,334원 포함)의 각 신고시인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과 그 배우자인 원고 B는 2014년 아래 표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인 D 주식회사(D 주식회사는 2015. 9. 2. C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C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단위: 주)

취득일	2014. 12. 18.	2014. 12. 22.	합계
원고 A	16,352	3,527	19,879
원고 B	10,228	2,329	12,557

나. 원고 A은 자신이 보유하던 가.항 기재 C 주식 19,879주 중 2014. 12. 29. 4,500주, 2014. 12. 30. 3,500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자신이 보유하던 가.항 기재 C 주식 12,557주 중 2014. 12. 29. 2,500주, 2014. 12. 30. 2,000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들이 위와 같이 매도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3

이 사건 주식 중 2014. 12. 29.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에 관하여는 2015. 1. 2.에, 2014. 12. 30.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에 관하여는 2015. 1. 5.에 각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들은 위 나.항의 C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1]와 같이 C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주	주식 수	계약체결일	대금결제일
A	4,500	2014. 12. 29.	2015. 1. 2.
	3,500	2014. 12. 30.	2015. 1. 5.
	11,879	2015년	2015년
B	2,500	2014. 12. 29.	2015. 1. 2.
	2,000	2014. 12. 30.	2015. 1. 5.
	8,019	2015년	2015년

라.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2017. 7. 1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이 C 주식에 관하여 2014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아래 표와 같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어 2015. 6.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2015 사업연도 C 주식의 양도에 따른 차익에 관한 양도소득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1) 원고들은 주식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갑 제4, 5호증)를 제출하면서 C 주식 중 원고 A은 2015. 1. 2. 16,111주, 2015. 1. 5. 120주, 2015. 4. 20. 121주, 2015. 7. 20. 3,527주를, 원고 B는 2015. 1. 5. 10,190주, 2015. 4. 20. 38주, 2015. 7. 20. 2,329주를 각 매도한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항변서에서 위와 같은 기재는 신고대리인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고이며 위 다.항의 표와 같이 매도하였다고 항변하였고, 매매보고서(갑 제6, 8호증)에도 위 표와 같이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3

원고	보유주식 수(주)	2014. 12. 31. 기준 시가(원)	시가총액(원)
A	19,879	158,000	3,140,882,000
B	12,557	158,000	1,984,006,000
합계	32,436		**5,124,888,000**

마. 이에 따라 2017. 7. 31. ① 원고 A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7,591,449원(가산세 160,788,450원 포함) 및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53,759,140원(가산세 16,078,841원 포함)에 대하여, ② 원고 B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812,190원(가산세 100,673,364원 포함) 및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33,681,216원(가산세 10,067,334원 포함)에 대하여 각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7. 10. 16.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여 새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신고시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소유하였던 C 주식 시가총액이 2014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50억 원 미만이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50억 원 이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3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도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즉시 잔고대체가 이루어지는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다만 개인고객과 증권사 간의 내부적 정산절차만이 남게 될 뿐 주식 매도인으로서는 사실상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12. 29.과 같은 달 30일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결제일이 2015. 1. 2.과 같은 달 5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12. 29.과 같은 달 30일이라고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권리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5호에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2]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의 소유 여부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 제9조 제13항에 규정되어 있던 증권시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제8조의2 제4항에서 증권시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가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하였다. 다만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3

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시스템상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결제까지 2영업일[3]의 시차가 발생하는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의 소유 여부를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대금결제일로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예측하지 못한 주가 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이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의 소유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 주가의 상승을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결제 사이에 2영업일의 시차가 있어서 이에 대응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2014. 12. 29.과 같은 달 30일의 주가 상승까지 예측하여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①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3)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는, 보통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그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을 포함하여 3일째 되는 날 즉, 매매계약 체결일 2영업일 이후에 매매대금이 결제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3

원칙에 부합한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과 관련하여 그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2/100 이상을 소유하거나(제1호)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제2호)는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은 그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혹은 감면 요건을 규정한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하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한편 상법 제336조에 의하면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3

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르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증권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어(자본시장법 제309조), 자본시장법 제311조는 예탁결제원에서 작성하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증권의 교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2014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자로서 C 주식에 관하여 보유 주식의 시가 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들은 2014. 12. 29.과 같은 달 30일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결제는 2영업일 이후인 2015. 1. 2.과 같은 달 5일에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계좌간 대체 기재도 2015. 1. 2.과 같은 달 5일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의 위탁 저축 실시간 잔고에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에 매도한 주식 수 상당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7, 9호증), 위 위탁 저축 실시간 잔고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라고 할 수 없고, 매매보고서(갑 제6, 8호증)에는 매매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3

금 결제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매매대금 결제일에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대체 기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4)].

(2) 한편 예탁결제원 지급명세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2014.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4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상법 제337조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기보다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315, 316조는 상법 제354조에 따라 주권의 발행인이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원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어도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일정한 날에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주와 일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들은 상장주식 거래 시스템상 주식매매 계약 체결 후 2영업일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에 기한 대금결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매매계약 체결일에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

4)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원고들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에도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매매대금 결제일에 이 사건 주식이 거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3

4항 제2호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혹은 감면 요건을 규정한 특혜규정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주식 양도내역이 기재되지 않는 한 매매계약 체결 후 2영업일 이후에 매매대금의 결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체결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는,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그러나 권리확정주의는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확정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규정이어서 위 규정의 해석에도 권리확정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설령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를 확정하기 위한 구 소득세법 제98조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98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3

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실질주주명부를 의미한다)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식의 경우 실질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 주식 매매대금의 결제로 인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기재로 그 양도시기가 보다 객관화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 즉 주식 매매대금의 결제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4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입법목적은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과 아울러 상장주식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 해당 기준과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접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②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3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거래를 하면 그 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결제 사이에 2영업일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들은 2014. 12. 29.과 같은 달 30일 C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원고들은 소득세법령의 해석상 어떠한 의의(疑義)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3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3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어 2015. 6.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3

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 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 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 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 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3

매계약을 체결한 날

■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행사 등)

② 실질주주는 제314조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3

④ 예탁결제원은 제310조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① 제315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11845호, 2013. 5. 28.>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⑬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끝-